

# 5. 후원회 지정신청 및 지정서의 교부

- 가. 후원회로서 외형과 실질을 갖춘 단체는 지정권자인 지방의회 의원에게 후원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.
- 나. 후원회지정권자인 지방의회의원은 자신을 후원하려는 1개의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으며, 지정한 후원회에 후원회 지정서를 교부합니다.
- 다. 후원회 대표자는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## 후원회지정권자(법 제6조)

- □ 지방의회의원(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 포함)
  - 시·도의회의원(지역구, 비례)
    - 예) 서울특별시의회의원○○○. 경기도의회의원○○○
  -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(지역구, 비례)
    - 예) 강동구의회의원()(), 안산시의회의원()(), 부여군의회의원()()

#### 후원회 지정 관련 과태료(법 제51조)

- □ 후원회지정권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후원회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등 후원회 등록신청을 해태한 자
-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 정관작성
 ▶
 창립총회 개 최
 ▶
 회의록 작성
 ▶
 후원회 지 정
 ▶
 인 영 조 각
 ▶
 사무소설 치
 ▶
 전 청

## [작성예시]

[규칙 별지 제3호 서식]

## 후원회 (지정) · (지정철회)서①

#### 문서번호

명	칭②		○○시·도의회의원(○○구·시·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								
사무소의	소 재	지 ③	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, 2층 201호	전 화	번 호	02-000-0000					
대 표 자 ④	성	명	김중앙 <b>(한자</b> : 金中央 <b>)</b>	주민등	록번호	710101-1234567					
	주	소	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○○ (○○동, ○○아파트)	전 화	번 호	010-1234-5678					
(지정)·(지	정칠	철회)	20 13	<u>.</u> 2]	OÌ						
연 월		일⑤	20 년	월	일						

「정치자금법」 제6조·제7조제3항 및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후원회를 (지정)·(지정철회)합니다.

20 년 월 일

○○시·도의회의원(○○구·시·군의회의원)○○○ ⑩ ⑥

○○시·도의회의원(○○구·시·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 귀중

주: "명칭"칸에는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7조에 따른 후원회의 명칭을 기재합니다.

정관작성	➤ <sup>창립</sup> 개	총회 최	회 으 작	l 록 성	▶     후       지	원 회 정	>	인 조	영 각	>	사 두 설	<sup>-</sup> 소 치	>	등 신	록 청	
L			ļ	ė				i								

	작 성 요 령
1)	후원회 지정 혹은 지정철회 중 하나를 선택하여 "○" 표시를 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.
2	후원회의 명칭을 적습니다. 예) 과천시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
3	후원회 사무소의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적습니다. ※ 도로명 주소를 알지 못할 경우 구주소(지번주소) 가능
4	후원회 대표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를 적습니다. ※ 후원회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※ 전화번호는 대표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 가능
(5)	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에 지정서를 교부한 연월일 또는 지정철회한 연월일을 적습니다.
<b>(6)</b>	후원회지정권자인 지방의회의원의 인장(도장)을 날인합니다.